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4): 연금제도의 모수-보험요율

김동겸 선임연구원

■ 연금제도는 기여금과 연금급여의 연관도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세방식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사회보험방식은 사회보험료 (social contribution)라는 기여금을 소득비례로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기여금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등화되는 형태임.
 -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기여금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등화되고 조세방식에서는 급여수준이 정액으로 균등화되어 있음.¹⁾
- 1889년 빌헬름 II가 독일에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여금을 근로자들이 부담도록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08년에 조세방식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후 사회보험방식으로 변경함.
 - 뉴질랜드와 호주는 도입 초기부터 기여금이 없는 조세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보험요율 또는 기여율(contribution rate)은 기여금 등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중 정률 또는 정액의 기여금이나 사회보장세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야 함.

- 기여율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은 취업자의 총소득 혹은 그 중 일부로 국가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임.²⁾
 -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0년대 말 보험요율을 하향조정한 반면,³⁾ 헝가리의 경우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1) 다만 기초연금에서는 재원이 기여금이든 조세이든 정액지급이 원칙이며, 조세방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되기도 함.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함. 반면,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5% 정도임. 따라서 연금 별 혹은 국가별 기여금부담수준을 비교할 경우 보험요율과 더불어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3) 보험요율을 낮춘 이유는 고용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려는 동기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음.

〈표 1〉 OECD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요율 및 수입

(단위: %)

국가	연금 보험요율 (총소득대비)						연금보험료 수입 (2008년 기준)				
	1994	1999	2004	2007	2009	2009	GDP 대비	세금 대비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합계							
호주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오스트리아	22.8	22.8	22.8	22.8	22.8	10.3	12.6	3.5	3.8	8.0	18.9
벨기에	16.4	16.4	16.4	16.4	16.4	7.5	8.9	2.3	2.0	4.7	10.7
캐나다	5.2	7.0	9.9	9.9	9.9	5.0	5.0	1.3	1.3	2.8	8.3
칠레			29.8	29.8	29.8	28.8	1.0				
체코	26.9	26.0	28.0	32.5	28.0	6.5	21.5	1.8	6.0	8.3	22.2
덴마크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에스토니아			35.0	22.0	22.0	2.0	20.0				
핀란드	18.6	21.5	21.4	20.9	21.6	4.5	17.1	1.6	7.1	9.1	21.2
프랑스	21.5	16.7	16.7	16.7	16.7	6.8	9.9				
독일	19.2	19.7	19.5	19.9	19.9	10.0	10.0	2.6	3.0	6.6	18.2
그리스	20.0	20.0	20.0	20.0	20.0	6.7	13.3	3.1	3.7	7.9	24.7
헝가리	30.5	30.0	26.5	29.5	33.5	9.5	24.0	1.1	5.8	6.8	17.3
아이슬란드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아일랜드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이스라엘			6.1	6.2	6.9	3.9	3.1				
이탈리아	28.3	32.7	32.7	32.7	32.7	9.2	23.8	2.1	6.5	8.6	19.9
일본	16.5	17.4	13.9	14.6	15.4	7.7	7.7	2.9	2.9	5.8	20.4
한국	6.0	9.0	9.0	9.0	9.0	4.5	4.5	1.5	1.0	2.5	9.3
룩셈부르크	16.0	16.0	16.0	16.0	16.0	8.0	8.0	2.6	2.4	6.0	16.5
멕시코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네덜란드	17.9	17.9	17.9	17.9	17.9	17.9	0.0				
뉴질랜드	기여금(contribution) 없음						0.0	0.0	0.0	0.0	
노르웨이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폴란드		19.5	19.5	19.5	19.5	9.8	9.8	3.6	2.7	7.7	22.1
포르투갈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슬로바키아	28.5	27.5	26.0	24.0	18.0	4.0	14.0	0.8	2.3	4.1	13.8
슬로베니아			24.4	24.4	24.4	15.5	8.9				
스페인	29.3	28.3	28.3	28.3	28.3	4.7	23.6	1.3	6.8	9.0	24.2
스웨덴	19.1	15.1	18.9	18.9	18.9	7.0	11.9	2.6	3.7	6.4	13.3
스위스	9.8	9.8	9.8	9.8	9.8	4.9	4.9	2.7	2.7	5.9	20.3
터키	20.0	20.0	20.0	20.0	20.0	9.0	11.0	1.1	1.1	2.2	9.3
영국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12.4	12.4	12.4	12.4	12.4	6.2	6.2	2.3	2.3	4.6	16.3
OECD 평균	19.2	19.3	20.0	19.8	19.6	8.4	11.2	1.8	2.9	5.1	14.2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OECD 국가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총 기여액은 각각 GDP의 1.8%와 2.8%로 나타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연금 보험료로 거두어들인 정부 수입이 GDP의 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OECD 국가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연금보험료의 35%를 납부하며, 고용주는 총보험료의 57%를 납부하게 됨.
 - 나머지는 자영업자의 기여금이며, 실업자 등 다른 계층의 기여금 또한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대다수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기여대상 또는 급여산정소득(pensionable earnings)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 보험료 산정은 월소득 기준으로 하한액보다 적을 때는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을 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월소득액이 하한에 못 미치는 경우는 미래에 작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여 향후 과다한 연금액을 수령하지 않도록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⁴⁾
 -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중심 국가는 상한소득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보험성격의 소득비례연금중심 국가는 상한소득을 다소 높게 설정함.
 - OECD 21개 회원국의 공적연금의 평균 상한선은 경제활동인구 소득의 185%에 해당하며,⁵⁾ 기여금에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음.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은 360만 원, 하한은 22만 원으로 제도 도입(1995년) 이후 2009년 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을 따져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3,890,000원과 240,000원이며,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연금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은 각각 350,100원과 21,600원임.

5)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